

의안번호	2210844
의 퇴 인	박해철 의원
회 답 일	2025.8.29.
추 계 번호	25B318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537억원, 2031년 4,823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2조 835억원(연평균 4,167억원) 이상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급 (안 제8조의5)	3,537	3,839	4,152	4,483	4,823	20,835	4,167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의5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의 지급)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직 중인 청년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금(이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해당 연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월(月) 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함(제2항)	의무규정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급 대상·금액·기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8조의5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의 지급) 신설	○	• 공식추계 - 본문참조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¹⁾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심의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구직 중인 청년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금(이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급 수준을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2025년 7월 기준, 단위: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명목임금상승률	3.2	3.9	3.8	3.8	3.8	3.8	3.8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청년구직 활동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개정안은 지급 대상·금액·기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2)에 근거하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로 통합되었음³⁾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 (지원요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생애 1회 지원)
- (지원내용) 월 50만원 x 6개월, 취업 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무 시 취업성공금 지급
- (지원절차)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매월 선정, 구직활동 보고서 확인 후 지급

[표 2] 2020년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집행내역

-
- 276,872백만원
 - 참여자수당 : (기본수당) 269,552백만원(95,730명×281.6만원)
(취업성공금) 5,643백만원(11,286명×500,000원)
 - 청년지원 프로그램 : 1,034백만원(51개×20백만원)
 - 일반수용비 등 기타경비 : 643백만원
-

자료: 고용노동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2021.3.

※ 국민취업지원 제도

- (사업개요) 2021년부터 추진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요건에 따라 두가지(Ⅰ 유형, Ⅱ 유형)으로 구분됨
- (지원요건) 소득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⁴⁾)과 구

2)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규 신청 마감 안내, 2020.

4) 제6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자격이 있다.

1.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직촉진수당 수급자격(「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⁵⁾)을 모두 갖춘 경우⁶⁾ I 유형으로 지원하고,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만 갖춘 경우 II 유형으로 지원

[표 3]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요건

구분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I 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험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 청년특례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5억원 이하	무관
II 유형	특정계층	무관	무관	무관	무관
	청년층	15~34세	무관	무관	무관
	중장년층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무관	무관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지원내용) I 유형과 II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I 유형: 6개월 간 매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 지급
 - * II 유형: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장려수당 등을 지원
- (전달체계)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신청

[표 4]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내용

구분	유형	세부 지원내용
취업지원 서비스	공통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생계지원	I 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6개월 지원

2.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3.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다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한다)인 사람은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이어야 한다.
- 5)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이 있다.
 1. 제6조에 따른 수급 요건을 갖춘 것
 2.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내의 범위에서 최저 생계비 및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일 것
 3.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6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4.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
- 6) 15~69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취업경험 미충족자는 선발형으로 지원),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저소득 구직자(15~34세 청년 중위소득 120%, 재산 5억 이하) 등

구분	유형	세부 지원내용			
		* 기본 50만원 및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조기 취(창)업시 잔여 기본구직촉진수당의 50%			
	II 유형	참여수당 15~25만원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만원 (6개월)	참여장려수당 1회 2만원(3회)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50만원 지급
	공통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시 5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지원(총 15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개정안은 추가재정소요 산출에 필요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급 대상·금액·기간·절차 등을 하위규정에 위임하고 있어 세부내용이 결정되지 않아 추가재정소요의 산출이 곤란
- 다만,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하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었다는 점에서 본 추계서는 현행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사업 구조를 토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에 대해 I 유형과 II 유형 모두를 지원하고 있고, 2025년에는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지원단가, 지원기간, 수급요건 등이 상이함
 - 그러나 개정안은 제안이유를 통해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지급 수준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취지임을 밝히고 있으므로⁷⁾, 개정안의 취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성격 및 특징을 고려하여 I 유형을 토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7)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 기준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있음.

(...)

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지급 수준을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명시하여 청년층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표 6] 구직촉진수당 지급 현황: 2021~2024년

(단위: 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월단가	500,000	500,000	500,000	500,000
I 유형 참여자 수(명)	340,649	219,527	228,929	251,776
15세 이상 34세 이하 참여자 수(명)	211,371	156,492	169,471	193,794
15세 이상 34세 이하 IAP 수립률(%)	98	98	99	99
15세 이상 34세 이하 지급횟수(회)	5.3	5.1	5.2	5.4

자료: 고용노동부

- 본 추계서에서의 추가재정소요는 사업대상자 수에 지급횟수와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이 중 사업대상자는 연도별 인정인원과 취업활동계획(이하 “IAP”) 수립률을 적용하여 산출
- (사업대상자 수) 지급인원은 연도별 인정인원에 IAP수립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사업 시행 시기를 고려하여 2021년을 제외한 2022~2024년 평균치를 적용하여 추계
 - －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한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이 구직활동 보고서를 확인한 후 지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추계서는 장래에 발생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급인원이 현행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동일하다는 가정을 토대로 연도별 인정인원에 현행 구직촉진수당의 취업활동계획(이하 “IAP”) 수립률을 적용하여 사업대상자를 산출
 - －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원인원은 향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관련한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지급횟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사업 시행 시기를 고려하여 2021년을 제외한 2022~2024년 평균치를 적용하여 추계
 -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도입에 따른 지급횟수는 현재 구직자촉진수당의 지급횟수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
- (지원단가) 개정안에 따른 지원단가는 추계기간(2027~2031년) 동안 월 최저임금액에 2/5를 적용하여 산출
 - － 현행법에 따른 지원단가는 월 50만원을 적용하여 산출
 - － 다만, 가족수당(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은 고려하지 않고 산출함
- 산출 결과, 개정안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에 3,537억원, 2031년 4,823억원 등으로 추계됨

[표 7]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인정인원(A, 명)		173,252	173,252	173,252	173,252	173,252
IAP 수립률(B, %)		98.7	98.7	98.7	98.7	98.7
평균 지급횟수(C, 개월)		5.2	5.2	5.2	5.2	5.2
지원단가 (백만원)	현행(D)	0.50	0.50	0.50	0.50	0.50
	개정안(E)	0.90	0.93	0.96	1.00	1.04
	차이(F=E-D)	0.40	0.43	0.46	0.50	0.54
추가재정소요 (G=A×B×C×F, 억원)		3,537	3,839	4,152	4,483	4,823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향후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현재 가용 가능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추산한 추가재정소요로, 개정안에 따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급 대상·금액·기간·절차 등이 현행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과 동일하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였고, 동 제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현행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사업 구조를 토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였으며, 향후 개정안에 따른 지급 대상·금액·기간·절차 등이 구체화 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장래의 경기변동 및 최저임금의 변화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